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07호 2018. 12. 11.(화요일)

조 례

- | | |
|-----------------|---|
| ○ 하동군 조례 제2315호 | 하동군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 지원 조례 3 |
| ○ 하동군 조례 제2316호 |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
| ○ 하동군 조례 제2317호 |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
| ○ 하동군 조례 제2318호 |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
| ○ 하동군 조례 제2319호 |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
| ○ 하동군 조례 제2320호 | 하동군 장기미집행 근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29 |
| ○ 하동군 조례 제2321호 |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32 |
| ○ 하동군 조례 제2322호 | 하동군 산촌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36 |
| ○ 하동군 조례 제2323호 |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41 |
| ○ 하동군 조례 제2324호 |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43 |
| ○ 하동군 조례 제2325호 |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5 |
| ○ 하동군 조례 제2326호 | 하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9 |

규 칙

- | | |
|-----------------|--------------------------------------|
| ○ 하동군 규칙 제1194호 |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1 |
| ○ 하동군 규칙 제1195호 |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4 |

훈 령

- | | |
|----------------|---|
| ○ 하동군 훈령 제394호 | 하동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 63 |
|----------------|---|

고 시

- | | |
|---------------------|--|
| ○ 하동군 고시 제2018-178호 | 양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88 |
| ○ 하동군 고시 제2018-179호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하동군수(건설교통과)) 89 |
| ○ 하동군 고시 제2018-180호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정승*) 90 |
| ○ 하동군 고시 제2018-181호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주)지에스이 유석형) 91 |
| ○ 하동군 고시 제2018-185호 |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고내마을) · 92 |
| ○ 하동군 고시 제2018-186호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서림 태양광발전소) 93 |
| ○ 하동군 고시 제2018-187호 | 하천 점용 허가 고시(가덕마을회 대표 유상천) 94 |

회 람									
--------	--	--	--	--	--	--	--	--	--

○ 하동군 고시 제2018-188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96
○ 하동군 고시 제2018-189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김은*)	98
○ 하동군 고시 제2018-192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대한불교쌍계사)	99
○ 하동군 고시 제2018-193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100
○ 하동군 고시 제2018-194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109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18-1184호	하동군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입법예고	110
○ 하동군 공고 제2018-1192호	하동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117
○ 하동군 공고 제2018-1193호	하동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20
○ 하동군 공고 제2018-1194호	하동군 영유아 보육 조례 입법예고	123
○ 하동군 공고 제2018-1198호	하동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34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8-1150호	제6회 하동군 지방일반임기제 (6,7급상당) 공무원 최종합격자 공고	141
○ 하동군 공고 제2018-1157호	하동군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48
○ 하동군 공고 제2018-1206호	2018년 환경개선부담금 2기분 독촉반송분 공시공달 공고	155
○ 하동군 공고 제2018-1207호	천년나무어린이집 원장 채용 공고	166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11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15 호

하동군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차 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 문화 보급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茶)”란 차나무(*Camellia sinensis* L.)의 잎 등을 이용하여 달이거나 우려 마실 수 있도록 한 음료나 그 재료를 말한다.
2. “차 산업”이란 차나무를 재배하거나 차의 생산, 가공, 제조, 유통, 판매 등 연관된 전반의 산업을 말한다.
3. “차산업종사자”란 차 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차 문화”란 차나무의 재배와 차잎의 채취, 가공, 품평, 저장, 판매, 이용, 다도, 역사 등 차와 관련하여 변화·발전되어 온 유형·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하동군(이하 “군” 이라 한다)은 차 산업의 발전 및 차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하동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차 산업의 육성과 차 이용의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차 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차 재배와 원료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4. 차 산업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차의 소비촉진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6. 차 문화의 발굴,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차 산업 발전과 차 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원 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2.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3. 그 밖의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또는 호선하여 정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동녹차연구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공무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을 위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의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위원 회의 및 수당)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① 군수는 차 산업과 차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1. 차 재배, 생산, 소비촉진을 위한 연구 및 시험사업
2. 차의 품질향상 및 하동차 브랜드 개발
3. 차를 이용한 제품 및 식품 개발
4. 그 밖에 차 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을 위하여 차와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차산업종사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차 경작지에 대한 생산기반시설 정비 지원
2. 차 경작지에 대한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3. 가루녹차 생산을 위한 차광시설 및 설치 지원
4. 차 연관제품 개발 지원
5. 차밭 유기질비료 지원
6. 세계농업유산 지정에 따른 차나무 경관보조금 및 관광사업지원
7. 차 수매 및 차밭관리 공동작업단 운영 지원
8. 고품질차 생산시설 지원
9. 홍차 등 발효차 생산시설 설비 지원
10. 차 신제품 개발 및 삼목묘 단지 확대조성 지원
11. 경관보전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하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
12. 그 밖에 차 산업종사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품질향상 지원) 군수는 차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리적표시녹차 및 차 품질관리 지원
2. 차 품평회 수상자 상사업비 지원
3. 하동차 생산자조직 활성화 지원
4. 차 품질관련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지원
5. 차의 품질향상에 관련된 연구소, 기관, 민간단체 등의 지원
6. 그 밖에 차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차의 이용 확대 및 소비촉진) ① 군수는 차의 이용 확대 및 차를 활용한 식품 등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차 및 차를 활용한 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가공방법 및 이용방법 등을 보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하동녹차 포장재 지원
2. 하동녹차 학교급식 지원
3. 하동녹차, 차 관련제품 전시·판매장 및 카페 운영 지원
4. 차 마시기 운동 지원
5. 차 만들기 체험관광 지원
6. 차 품평대회 개최 지원
7. 하동차 홍보지원
8. 하동야생차문화축제 지원
9. 그 밖에 차의 이용 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세계화 지원 등) 군수는 차 및 차 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세계 차 품평대회 및 세계 차 박람회 개최
2. 해외 차 판매점·체험관 등 설치
3. 국내외 차 박람회·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
4. 각종 국제인증 지원
5. 차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수출 장려
6. 수출 전문 녹차단지 및 가공단지 조성 지원
7. 그 밖에 하동녹차 세계 중요농업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차 및 차 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차문화 보급·지도 등 지원) 군수는 차 및 차 문화를 보급하거나 지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 차 예절경연대회 개최
2. 차 관련 워크숍 및 학술행사 개최
3. 하동차 명인 및 명장 지정 지원
4. 그 밖에 차 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준용) 보조금의 신청,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11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16호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를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로 한다.

제2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9조 중 “제4호” 를 “제3호” 로, “제한하여야 한다” 를 “제한할 수 있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위원회 설치)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u>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u></p> <p>③ ~ ⑦ (생략)</p>	<p>제6조(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위촉직 위원의 경우 <u>「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u></p> <p>③ ~ ⑦ (현행과 같음)</p>
<p>제21조(실적보고) ① ~ ③ (생략)</p> <p>④ <u>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는 지방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지방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u></p>	<p>제21조(실적보고) ① ~ ③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u>제4호</u>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게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p>	<p>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 <u>제3호</u>----- ----- ----- --- 제한할 수 있다.</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11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17 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총 계		683	-						
정무직 계		1	-						
군수		1	1						
일반직 계		652	-						
4급		3	3						
4급~5급		2			1			1	
5급		36	16	2	1	5			12
6급 이하 계		611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1		1					
6급 상당		2	-						
연구직 계		2	-						
연구관		-							
연구사		2	-						
지도직 계		25	-						
지도관		-							
지도사		25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p>										<p>[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총 계		683	-																																						
정무직 계		1	-																																						
군수		1	1																																						
일반직 계		652	-																																						
4급		3	3																																						
4급~5급		1			1																																				
5급		37	16	2	1	5		1	12																																
6급 이하 계		611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1		1																																					
6급 상당		2	-																																						
연구직 계		2	-																																						
연구관		-																																							
연구사		2	-																																						
지도직 계		25	-																																						
지도관		-																																							
지도사		25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11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18 호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2017년 12월 31일” 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 을 “2020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7조 중 “2017년 12월 31일” 을 “2020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8조 중 “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 을 “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 ” 로, “100분의 100” 을 “100분의 50” 으로 한다.

제9조 중 “2017년 12월 31일” 을 “2020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10조 제목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을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 을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 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3항 중 “시(군)세” 를 “군세” 로, “시장(군수)” 을 “군수”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 3. (생략)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 2020년 12월 31일 -----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 -- 100분의 50 -----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 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은 다음과 같다.

-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 2.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생략)

제11조(주민등록 전입세대에 대한 감면)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에 해당하는 전입세대 중 「지방세법」 제79조제2항에서 규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2020년 12월 31일-----.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
-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정한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세 개인
균등분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주
민세 개인 균등분 납세의무가 최초
로 성립된 날부터 2년간 면제한다.
단,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한다.

제18조(감면신청 등) ①·② (생
략)

③ 제2조에 따라 시(군)세를 감면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
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
·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
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제18조(감면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군세-----

군수-----

-.

④ (현행과 같음)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11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19 호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에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
- 10.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 11.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
- 12.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 13. 규칙 제3조제3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14.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지형도상에 표준단위면적(100m×100m)을 설정하여 단위면적안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 를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또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300미터” 를 각각 “500미터” 로 한다.

별표 1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신청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8호 관련)

1.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다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설치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허용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다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설치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은 허용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에 한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다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설치하는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에 한한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
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생 략)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
지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지형도
상에 표준단위면적
(100m×100m)을 설정하여 단위
면적안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
한다.

3. (생 략)
- ② (생 략)

제17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주변경관, 환경오염, 위해발
생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에 관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
다.

1. 도로(「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
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3.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

-----.

1.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또는 「도로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직
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5호이상, 주택간 거리 100미터
이내)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
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

----- 500미터

3. 관광지(「관광진흥법 제52조」
에 따른 지역) 경계로부터 직선
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

----- 500미터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8호 관련)

2.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
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
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조례로 따
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생 략)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
(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
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
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단서 신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8호 관련)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

----- . 다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설치
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허

용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11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20 호

하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하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대지보상특별회계”를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한다.

제8조 중 “대지보상특별회계”를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존속기한)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하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u></p> <p>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생략)</p> <p>② <u>대지보상특별회계</u>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p> <p>제8조(준용) <u>대지보상특별회계</u>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p> <p><u><신 설></u></p> <p>제9조 (생략)</p>	<p><u>하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u></p> <p>제2조(설치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대지보상 특별회계</u>----- ----- ----- -----.</p> <p>제8조(준용) <u>대지보상 특별회계</u>--- ----- ----- ----- -----.</p> <p>제9조(준속기한) <u>대지보상 특별회계</u>의 <u>준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준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준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준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u></p> <p>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11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21 호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등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

로 본다.

④ 제4조제6항 및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2(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법 제35조의2제1항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영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2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의 단서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를 2미터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 ① (생 략) <u><신 설></u></p> <p>② · ③ (생 략) <u><신 설></u></p>	<p>제8조(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등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u></p> <p>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p> <p><u>제8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u></p> <p><u>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u></p> <p><u>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u></p> <p><u>④ 제4조제6항 및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u>제20조의2 (생 략)</u></p>	<p><u>제20조의2(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법 제35조의2제1항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영 제3조의5의 용</u></p>

제2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② (생략)

<신 설>

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2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86조제3항의 단서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를 2미터 이상으로 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산촌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11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22 호

하동군 산촌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산촌생태마을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하동군 산촌생태마을(이하 “생태마을”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능) 생태마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의 문화체험 및 휴양의 장소제공
2. 생태프로그램 및 정보교환의 장소제공
3. 견학 및 체험 등을 통한 시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4.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산물 및 기타 특산품의 수집, 재배, 생산 및 판매
5. 그 밖에 생태마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조직)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마을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생태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생태마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맞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태마을의 시설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및 연장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다.

제6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단,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관리비 포함) 납부방법 등을 협약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운영 성과에 따라 재협약여부를 협약만료 2개월 전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시설 사용자와 관련하여 발생된 수탁시설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와 시설사용자 서로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만, 시설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보수 및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수탁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수탁자는 생태마을의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 관리계획
2. 생태마을 시설 유지관리
3. 숙박시설 등 유료시설 운영
4. 그 밖에 생태마을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운영비지원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생태마을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외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생태마을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연 1회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생태마을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1.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시설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
- 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 4.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 5.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6. 그 밖에 군수가 위탁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사정에 따라 직접 허가취소를 요청을 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생태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11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23 호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제5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기준	이용기간	요 금		비 고	
			성수기	비수기		
숙박시설	숲속의 집 (단독형)	6인용(43.05㎡)투룸	1동/1일	<u>110,000</u>	<u>80,000</u>	
	트리하우스 (단독형)	2인실(24.11㎡)	1동/1일	<u>80,000</u>	<u>60,000</u>	
		3인실(27.05㎡)	1동/1일	<u>100,000</u>	<u>70,000</u>	
		4인실(35.03㎡)	1동/1일	<u>110,000</u>	<u>80,000</u>	
숲속휴양관 (콘도형)	6인용(37~40㎡)원룸 8인용(45~47㎡)원룸	1실/1일	<u>100,000</u> <u>110,000</u>	<u>70,000</u> <u>80,000</u>		
객실이용요금 감면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	장애인	1~3급	객실요금의 30%할인			
	지역주민		객실요금의 30%할인(비수기주중에 한함)			
	다자녀가정 (1가정 1실에 한함)		객실요금의 20%할인(비수기주중에 한함)			
	국가보훈대상자	1~3등급 4~7등급	객실요금의 30%할인(비수기주중에 한함) 객실요금의 20%할인(비수기주중에 한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u>객실요금의 20%할인(비수기주중에 한함)</u>			
세미나실	1실 405㎡	4시간 기준	300,000	200,000	1실	
		8시간 기준	400,000	300,000	1실	
세미나실의 감면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요금의 50% 할인			
구분	기준	요금		비고		
입장료	어 른 청소년 어린이	1인/1일	개인	단체	동절기 (12~2월)에는 입장료 면제	
			1,000 600 300	800 500 200		
모노레일	인	1,000	800			
산림레포츠 시설	어린이코스 성인코스 스포츠코스 스카이쥬(코스당)	인	10,000	8,000		
			15,000	13,000		
			15,000	13,000		
			10,000	8,000		
목재문화체험장	대품(기계작업)	체험시간 (2시간기준)	<u>3,000</u>	<u>2,400</u>	체험 재료비 별도	
	중품(공구작업)		<u>2,000</u>	<u>1,600</u>		
	소품(단순작업)		<u>1,000</u>	<u>800</u>		
	목재체험장 시설사용	<u>4시간</u>	<u>40,000</u>			

1. 숙박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사용당일 15: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로 하며, 시간초과 시 1일 사용료를 추징 할 수 있다.
2. 숙박시설의 1일 미만 사용 시에는 1일 사용료 징수한다.
3. 세미나실 1일 사용시간은 사용당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4. 숙박시설 인원초과 시 1인당 10,000원을 추징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11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24 호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정 감염병 환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의 취소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1. <u>감염병 환자 및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u></p> <p>2. 3. (생략)</p>	<p>제11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 ----- ----- ----- ----- -----.</p> <p>1. <u>법정 감염병 환자</u></p> <p>2. 3. (현행과 같음)</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11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25 호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군” 을 “하동군(이하 “군”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수” 를 “하동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 로 하고, 제3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 관련 법령상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 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지역의 관급공사 발주 또는 민간사업 인가·허가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및 중장비 사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하동군” 을 “군” 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은 민원과장, 재정관리과장, 건설교통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u>군지역</u>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자재생산 또는 건설용역업을 말한다.</p> <p>2. (생 략)</p> <p>제3조(군수의 책무) ① <u>군수</u>는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육성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 략)</p> <p>⑤ <u>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관련 법령상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 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행 결과에 따라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 우대와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u></p>	<p>제2조(정의) ----- -----.</p> <p>1 ----- ----- ----- <u>하동군</u> <u>(이하 "군"이라 한다</u> <u>다</u> <u>)</u>----- -----.</p> <p>2. (현행과 같음)</p> <p>제3조(군수의 책무) ① <u>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u>----- ----- -----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관련 법령상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 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u></p>

⑥ 군수는 지역의 관급공사 발주 또는 민간사업 인가·허가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및 중장비 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이행결과에 따라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 우대와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설치)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은 민원과장, 재정관리과장, 건설교통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서 신설>

1. ~ 5. (생략)

⑥ 군수는 지역의 관급공사 발주 또는 민간사업 인가·허가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및 중장비 사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 설치) ① -----
 ----- 군 -----

 -.

제7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 5. (현행과 같음)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11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26 호

하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하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일비/여비 지급기준액(제13조 관련)

구 분	기 준 액
일 비	150,000원 / 1일
여 비	「하동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의회에서 선임한다. <u>다만, 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u></p> <p>② ~ ④ (생략)</p> <p>[별표 2]</p> <p>일비/여비 지급기준액</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기 준 액</th> </tr> </thead> <tbody> <tr> <td>일비</td> <td>100,000원 / 1일</td> </tr> <tr> <td>여비</td> <td>「하동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td> </tr> </tbody> </table>	구분	기 준 액	일비	100,000원 / 1일	여비	「하동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	<p>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 ----- ----- . <단서 삭제></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별표 2]</p> <p>일비/여비 지급기준액</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기 준 액</th> </tr> </thead> <tbody> <tr> <td>일비</td> <td>150,000원 / 1일</td> </tr> <tr> <td>여비</td> <td>「하동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td> </tr> </tbody> </table>	구분	기 준 액	일비	150,000원 / 1일	여비	「하동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
구분	기 준 액												
일비	100,000원 / 1일												
여비	「하동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												
구분	기 준 액												
일비	150,000원 / 1일												
여비	「하동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11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규칙 제 1194 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읍·면장의 직급(제12조 관련)

읍면사무소명	직 위	직 급	비 고
하동읍 행정복지센터	하동읍장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화개면사무소	화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악양면사무소	악양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적량면사무소	적량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횡천면사무소	횡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고전면사무소	고전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금남면사무소	금남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금성면사무소	금성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진교면 행정복지센터	진교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양보면사무소	양보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북천면사무소	북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청암면사무소	청암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옥종면 행정복지센터	옥종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읍·면장의 직급(제12조 관련)				[별표 3] 읍·면장의 직급(제12조 관련)			
읍면 사무소명	직 위	직 급	비 고	읍면 사무소명	직 위	직 급	비 고
하동읍 행정복지 센터	하동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하동읍 행정복지 센터	하동읍장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11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규칙 제 1195 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제2조 관련)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총 계			683	330	71	72	13	22	175
정무	정무직 계		1	1					
일 반 직	정무직		1	1					
	일반직 계		652	326	71	47	11	22	175
	4급 소계		3	3					
	서기관·기술서기관		3	3					
	4~5급소계		2		1			1	
	기술서기관·보건사무관·간호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보건진료사무관		1		1				
	서기관·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		1					1	
	5급 소계		37	16	1	5	2	1	12
	행정		4	3			1		
	의무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시설		1	1					
	행정·농업		2						2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시설		4	4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농업·시설		2	1					1
	행정·농업·수의·지도관		1			1			
	행정·공업·농업·시설		5	2			1		2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시설·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농업·지도관		2			2			
	농업·지도관		2			2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일 반 직	6급 소계		159	80	13	12	2	5	47
	행정		10	9	1				
	세무		1	1					
	속기		1				1		
	녹지		1	1					
	해양수산		1	1					
	보건진료		5		5				
	환경		2	2					
	시설		6	6					
	운전		4	1		1			2
	행정·세무		16	9				1	6
	행정·사회복지		9	6				1	2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20	3		6		1	10
	행정·녹지		3						3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16	15					1
	전산·방송통신		1	1					
	농업·녹지		3	2		1			
	농업·수의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4						4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세무·농업		8	4					4
	행정·세무·시설		3	3					
	행정·세무·전산·농업		3	1			1		1
	행정·전산·농업		1					1	
	행정·전산·방송통신·시설		3			1			2
	공업·환경·보건		1	1					
	행정·공업·시설		5	4					1
	행정·농업·녹지		3	1		1			1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시설		4	1					3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보건·간호		4		3				1
	행정·시설·환경		2	1					1
	행정·해양수산·보건		3					1	2
	보건·의료기술·간호		3		3				
	행정·공업·환경·시설		3	3					
	행정·농업·녹지·환경		2	1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1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일 반 직	7급 소계	185	89	19	12	4	9	52
	행정	20	14		1	2	1	2
	세무	2	2					
	전산	1	1					
	사회복지	9	2				1	6
	숙기	1				1		
	공업	2	2					
	농업	1			1			
	녹지	2	2					
	해양수산	3	3					
	시설	16	11				1	4
	의료기술	4		4				
	보건	2		2				
	보건진료	6		6				
	환경	2	2					
	수의	2			2			
	운전	11	2	2			2	5
	행정·세무	5	3					2
	행정·사회복지	6	5					1
	행정·공업	3	2		1			
	행정·농업	16	4				2	10
	행정·시설	16	12					4
	행정·환경	2	2					
	행정·방송통신	1						1
	공업·환경	1	1					
	농업·농촌지도사	3			3			
	농업·수의	1			1			
	보건·약무	1		1				
	보건·환경	1		1				
	행정·세무·농업	4	1				1	2
	행정·세무·시설	4	2					2
	행정·전산·농업·방송통신	4	1			1		2
	행정·전산·시설	2	2					
	행정·농업·녹지	4	3					1
	행정·농업·농촌지도사	2			2			
	행정·농업·보건	1						1
	행정·농업·시설	7	4					3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환경	2						2
	행정·환경·시설	2	1					1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보건·환경	3	1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식품위생	3			3				
행정·공업·보건·환경	3	2					1	
통신운영	1						1	

구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 회 사무과	읍	면
	직급별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일 반 직	8급 소계		147	64	33	5	2	3	40
	행정		14	7			2		5
	세무		1	1					
	사회복지		6	2				1	3
	행정·농업·방호		1			1			
	공업		1			1			
	해양수산		2	2					
	보건		12	2	10				
	간호		1		1				
	의료기술		9		9				
	보건진료		5		5				
	식품위생		1		1				
	환경		1	1					
	시설		10	6					4
	행정·세무·농업·시설 관리		1	1					
	운전		7	1		1			5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시설		8	3				1	4
	행정·전산		2	2					
	행정·전산·농업		11	2		2			7
	행정·해양수산·시설 ·방재안전		5	3					2
	행정·시설		9	9					
	전산·방송통신		1	1					
	행정·공업·환경		4	4					
	농업·녹지		4	4					
	행정·보건·간호		4	1	3				
	약무·보건		1		1				
	행정·세무·농업		8	2					6
	행정·농업·시설		4	2					2
	행정·보건·환경		5	2				1	2
	행정·공업·시설		3	3					
	보건·간호·의료		3		3				

N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일 반 직	9급 소계	120	74	4	13	1	4	24
	행정	21	14		2	1	2	2
	사회복지	18	7				1	10
	환경	2	2					
	공업	5	5					
	해양수산	1	1					
	보건	2	2					
	운전	2						2
	행정·세무	5	5					
	행정·사회복지	7	3				1	3
	행정·농업	9	1		6			2
	행정·시설·방호	19	19					
	농업·녹지·시설	2	2					
	농업	2			2			
	보건·간호	3		3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전산·통신	3	2		1			
	행정·세무·시설	4	4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7	3		2			2
	행정·환경·시설 ·방재안전	5	4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별 정 직	별정직 계	3	1			2		
	5급 상당 소계	1				1		
	행정·별정	1				1		
	6급 상당 소계	2	1			1		
	비서	1	1					
	의회전문위원	1				1		
연 구 직	연구직 계	2	2					
	학예연구사	1	1					
	기록연구사	1	1					
지 도 직	지도직 계	25			25			
	농촌지도사	25			25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구분	기관별 직급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총 계		683	330	71	72	13	22	175			
정무	정무직 계	1	1								
	정무직	1	1								
일반직	일반직 계	652	326	71	47	11	22	175			
	4급 소계	3	3								
서기관· 기술서기관	서기관· 기술서기관	3	3								
	4~5급소계	2		1			1				
기술서기관· 보건사무관· 간호사무관· 의료기술사무관· 보건진료사무관	기술서기관· 보건사무관· 간호사무관· 의료기술사무관· 보건진료사무관	1		1							
	<신 설>										
5급 소계	5급 소계	37	16	1	5	2	1	12			
	행정	4	3			1					
의무	의무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시설	1	1								
행정·농업	행정·농업	2							2		
	행정·사회복지· 농업	1								1	
행정·시설	행정·시설	4	4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농업·녹지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농업·시설	2	1							1	
행정·농업·수의· 지도관	행정·농업·수의· 지도관	1			1						
	행정·공업·농업· 시설	5	2			1			2		
행정·사회복지· 농업·녹지	행정·사회복지· 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시설· 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 시설	행정·해양수산· 시설	1								1	
	행정·환경	1	1								
행정·사회복지·	행정·사회복지·	2							1	1	

[별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 관련)										
구분	기관별 직급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총 계		683	330	71	72	13	22	175		
정무	정무직 계	1	1							
	정무직	1	1							
일반직	일반직 계	652	326	71	47	11	22	175		
	4급 소계	3	3							
서기관· 기술서기관	서기관· 기술서기관	3	3							
	4~5급소계	2		1				1		
기술서기관· 보건사무관· 간호사무관· 의료기술사무관· 보건진료사무관	기술서기관· 보건사무관· 간호사무관· 의료기술사무관· 보건진료사무관	1		1						
	<신 설>									
5급 소계	5급 소계	36	16	1	5	2		12		
	행정	4	3					1		
의무	의무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시설	1	1							
행정·농업	행정·농업	2								2
	행정·사회복지· 농업	1								1
행정·시설	행정·시설	4	4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농업·녹지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농업·시설	2	1							1
행정·농업·수의· 지도관	행정·농업·수의· 지도관	1						1		
	행정·공업·농업· 시설	5	2					1		2
행정·사회복지· 농업·녹지	행정·사회복지· 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시설· 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 시설	행정·해양수산· 시설	1								1
	행정·환경	1	1							
행정·사회복지·	행정·사회복지·	1								1

농업·시설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농업·지도관	2			2			
농업·지도관	2			2			

농업·시설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농업·지도관	2			2			
농업·지도관	2			2			

「하동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18년 12월 11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훈령 제 349 호

하동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5. “공익신고자등” 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6. “불이익조치” 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 7. “내부 공익신고자” 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하동군(이하 “군” 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공직자(이하 “공직자” 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
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
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
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세부추진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
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이행을 위한 지침(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포함) 등을 참고하여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
책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군수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
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
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 2.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 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에 설치한다.

제9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① 군수는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소속직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제10조(공익신고 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
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
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
른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
백한 경우에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
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
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
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제13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14조(대표자 선정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제15조(출장 접수)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아 접수할 수 있다.

제16조(보완의 요구)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7조(신고의 취소)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책임관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18조(공익신고기록)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④ 군수는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 외의 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 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신고의 처리

제19조(공익신고의 조사) ① 군수는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④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⑦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군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하여,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제21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20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 또는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제19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21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제23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공직자는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공직자는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공직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군수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소속직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5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① 군수는 공익신고등을 한 소속직원이 전직, 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익신고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

이 우수한 소속직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26조(신변보호 안내) 군수는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27조(징계의 감면) ① 군수는 공직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직자를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직자가 이 지침에 따라 공익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8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군수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30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군수는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처분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

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제31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군수는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 에 기여한 경우
4.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2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군수는 공익신고자가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과견근무 등으로 소용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제33조(협조 등의 요청) 군수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준용) ① 공익신고등의 상담·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5장 보 칙

제3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 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서식 1]

신 고 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일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피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하 동 군 수 귀 하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서식 2]

공 익 신 고 접 수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접수일자	제목	접수경로 (①직접 접수, ②권익위 이첩·송부, ③타기관 이송)	처리결과 (조사, 타기관 이송, 종결)	비고
201x - 00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서식 3]

접 수 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하 동 군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접 수 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하 동 군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서식 4]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p>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부동의</p> <p>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부동의</p>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하 동 군 수 귀하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서식 6]

20 년 월 일 접수
20 공익 제 호

접수자	센터장

공 익 신 고 기 록

신고제목			
담당부서		담 당	
신고자 성명		피신고자성명	

처 리	조사종료일	20 년 월 일	내 용	
	이 송 일	20 년 월 일	이송기관	
	결과통보일	20 년 월 일	대상자 (대상기관)	

신분공개 동의여부	조사기관	수사기관	종결확인	담당	센터장
종 결 일	20				
보존기간	년 (20 까지)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서식 7]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하동군 및 그 소속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하동군 및 그 소속기관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서식 8]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 우리 기관에서 이송한 공익신고 사항 처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공익신고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피신고자 보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12조 제1항)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1.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 조사기관등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종료 후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법 제12조 제1항)

가.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됨

나.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다. “나”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됨

◦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조사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야 합니다.

2. 공익신고 처리 시 피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됩니다.(법 제10조 제5항)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서식 9]

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제목		
처리결과		
결과통보일		
신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이의신청 이 유		

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하 동 군 수 귀하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서식 10]

(앞쪽)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추천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90일	
① 추천기관	추천기관명					
	소관부서	(전화번호)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소 속					
	직업(직위)					
	[] 내부 공익신고자		[] 외부 공익신고자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③ 추천사유						
④ 공익신고 조사결과	신고기관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					
	조사수사기관		결과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있음 (기관명 :) [] 없음				
	수령여부	[] 있음 (금액 :) [] 없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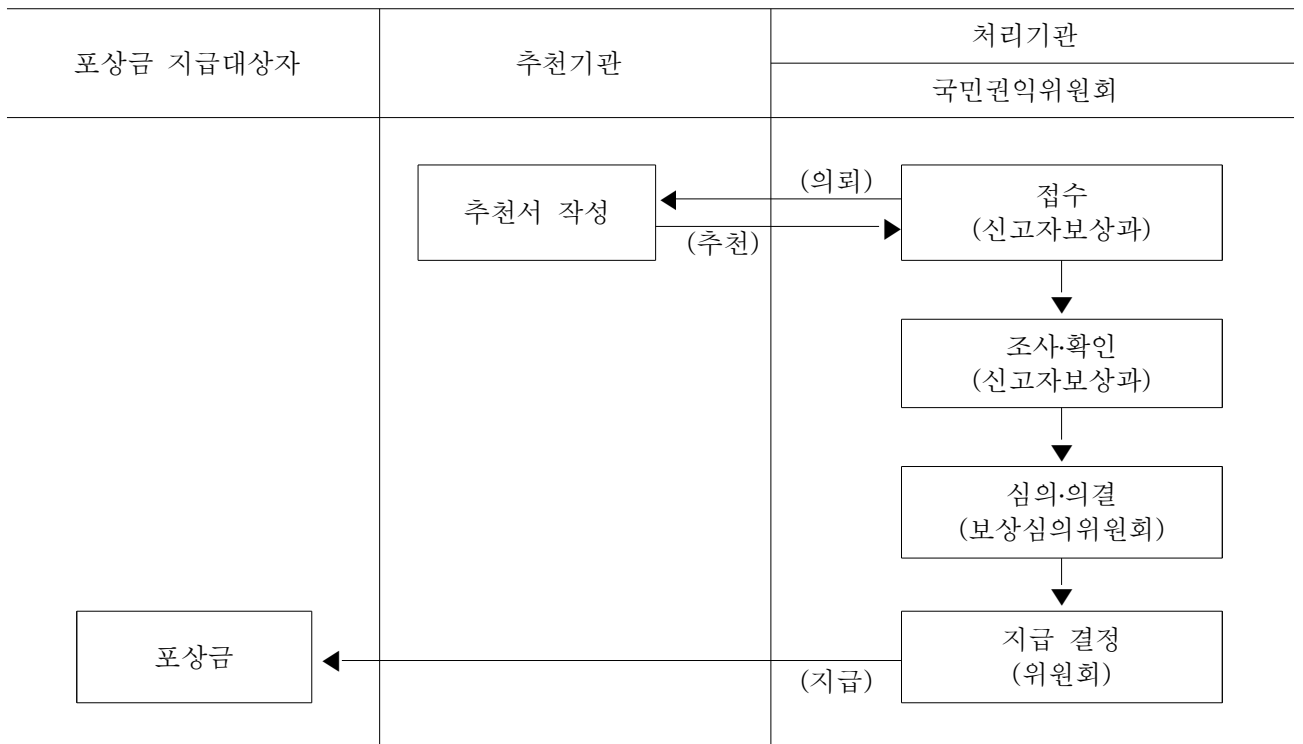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자료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①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명, 소관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 란에는 추천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및 소속과 직업을 기재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인지 외부공익신고자인지 해당되는 항목의 []에 ✓를 표시합니다. 또한, 제22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하였음을 []에 ✓를 표시합니다.
3. ③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하는 사유를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기재합니다.
4. ④ 란에는 신청인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기관명, 공익신고일자와 신고내용의 요지, 공익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처리결과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5. ⑤ 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 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에 ✓를 표시합니다.
6. ⑥ 란에는 추천기관의 소관 부서장직의 직위와 이름을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합니다. 다만, 동 추천서를 추천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공문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이 추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하동군 고시 제2018 - 178호

양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변경)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4항 및 동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양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일

하 동 군 수

1. 사 업 명 : 양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 사업목적 : 농촌중심지를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거점으로서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 역할 수행
3. 위 치 : 하동군 양보면 운암리 일원
4. 총사업비 : 5,954,000천원(국비4,168,000천원, 지방비1,786,000천원)
5.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문화센터조성, 복지목욕탕 신축 (당초: 기존복지목욕탕 리모델링)
 - 게이트블장 지붕개선 1식, 양보꽃살장 조성 1식, 보행로·통학로 정비 1식
 - 지역경관개선
 - 주교천 생태순환길 1식
 - 가로환경개선사업 1식(삭제)
 - S/W(지역역량강화)사업 부분
 - 교육, 컨설팅, 마을경영지원 등
6.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서부지사장
7. 사업시행기간 : 2017년 09월 ~ 2019년 12월(당초: 2018년 12월까지)
8. 관계도서배치 :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서부지사(☎055-880-5133), 하동군청 건설교통과(☎055-880-2548)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8-179호

허가 대상자	성 명 하동군수(건설교통과)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613-83-00025
	주 소 경상남도 하동군 군청로 23	

장소

점용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956(구),외 1필지(덕은리 962)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61㎡

(또는

㎡)

목적

도로 개설(하동군 관리 계획)

기간

영구

점용·사용의 유형

콘크리트 포장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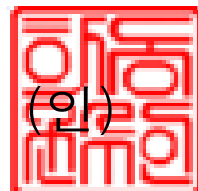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하 동 군 수 (인)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8-180호

허가 대상자	성 명 정승*	생년월일(성별) 65.01.17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650117-1*****
	주 소 경상남도 하동군 읍내리 소재1길 21	

장소

점용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08-37(구) 인근 : 명성 세차장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34㎡ (또는 m³)

목적

창고용 컨테이너 설치

기간

2018.11 ~ 2023. 11.

점용·사용의 유형

창고용 컨테이너 설치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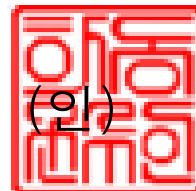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 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의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하 동 군 수 (인)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8-181호

허가 대상자	성 명 (주) 지에스이 대표 유석형	생년월일(성별) -
	전화번호 010-3909-2265(차문수 과장) 055-884-1900(사무실)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110111-0624969
	주 소 하동군 적량면 황금길 19	

장소

점용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547-2(구) 인근 : 연화빌라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0.9㎡

(또는

㎡)

목적

도시가스 배관 매설

기간

영구

점용·사용의 유형

배관 매설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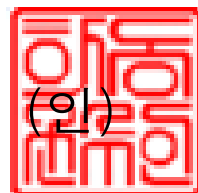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하 동 군 수 (인)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연장 허가 공고

공고 제2018-185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연장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하 동 군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대표자 (성명)	고내마을이장 (강형규)	주소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길 193-1
소하천명		고내절골천		
공사(점용·사용)개요	위치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 1241-4(인근 929-1)		
	면적	61㎡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0㎡
	기간	2018.11.27.~2023.11.26.		
	목적 및 사유	파고라 설치(마을 쉼터 조성)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실시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위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8-186호

허가 대상자	성 명	서림태양광 발전소 대표 이범술	생년월일(성별)	1963.02.20
	전화번호	010-3882-6322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630220-1*****
	주 소	하동군 청암면 명사길 325-10		

장소

점용 : 청암면 명호리 1512-33(구)번지 인근 : 청암면 명호리 산 229-8,803-1,809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11.0㎡

(또는

㎡)

목적

진출입로

기간

2018.11 ~ 2023.11

점용·사용의 유형

파형관 매설 및 포장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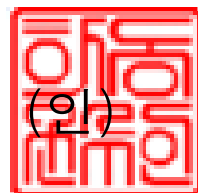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하 동 군 수 (인)



하 천 점 용 허 가 증

제2018-호

주 소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산성길 10		
성명(법인명)	기덕마을회 유상천		
법 인 번 호	620202-190641*****		
하 천 명 칭	덕천강하천	하 천 등 급	지방하천
점 용 장 소	옥종면 병천리 26-8(제),26-2(답)		
점 용 면 적	30㎡		
최 초 허 가 일	2018년 11월 30일		
점 용 기 간	2018. 11. ~ 2023. 11.		
허 가 조 건	붙임 참조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하 동 군 수 인



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허 가 조 건

1. 제출된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별도 변경 협의를 받아야 하고, 허가시설물의 다른 시설물이 추가설치 되거나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가만료 1개월 전까지 하천점용 연장 허가신청 하여야 합니다.)

2. 본 점용으로 발생하는 제반피해에 대하여는 피허가자가 본인이 해결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도 감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농기계 및 차량의 통행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도 피 허 가자 본인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점용 및 공작물 설치로 편입되는 하천구역내의 사유 토지 등 제3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있을 경우 보상 또는 협의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4. 공익상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점용장소를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하천법에 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 협의,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6. 소음, 공해, 기타행위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않되** 며, 민원발생시 점용허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접지역이 하천임을 감안하여 오폐수 유입방지를 위해 점 용지 유 지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위 각항 및 관계법규를 위반하거나 관리청이 하천공사시행 등 국가 및 공익상의 공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또는 추가 할 수 있으며, 당해 필지의 공작물(건물, 기타 축조물)에 대한 보상은 불가 하며 이에 따른 보완이나 이설 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 허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하동군 고시 제2018 - 188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1. 30.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776 외 1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11. 3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이 동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 고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1119-7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776	2018 1130		2009 0710	섬진강 지역명 사용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19-1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301	2018 1130		2007 0618	도로시점이악양중심으로부터 서쪽에위치하는 방향성 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621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진양로 1085-19	2018 1130		2009 0302	진교면과 양보면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로 진교면의 "진"과 양보면의 "양"으로 도로의 진행방향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317-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1601	2018 1130		2009 0702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용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상이리 787-1, 785-1, 786-2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고래실길 254	2018 1130		2007 0618	마을 뒷산이 고래등같이 생겼다하여 붙여진 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208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공월길 36	2018 1130		2007 0618	공월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관곡리 산91-1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관곡송림길 51-55	2018 1130		2007 0618	관곡리에 위치한 송림 마을명을 관곡송림길이라 명명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619, 620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대티길 62	2018 1130		2007 0618	대나무가 많다고 하여 붙여진 대티란 지명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등촌리 145-1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덕기길 7-9	2018 1130		2007 0618	덕기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성리 175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성두길 62-96	2018 1130		2007 0618	마을 앞뜰에 고인돌이 북두칠성 별자리처럼 놓여져 있었다는 지형적 조건에 유래된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580-4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황금길 5	2018 1130		2007 0618	주민들의 건의로 황금길로 명명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8-189호

허가 대상자	성 명 김 은 *	생년월일(성별) 1970.08.02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700802-2*****
	주 소 경남 진주시 가호로 26, 203동 212호	

장소

점용 : 양보면 운암리 1039 인근 : 청암면 명호리 908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89㎡ (또는 ㎡)

목적

진출입로

기간

2018.11 ~ 2023.11

점용·사용의 유형

인공 구조물 점용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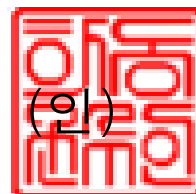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하 동 군 수 (인)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8-192호

허가 대상자	성 명 대한불교쌍계사	생년월일(성별) -
	전화번호 055-883-1901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614-82-01328
	주 소 경남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길 59	

장소

점용 : 화개면 운수리 861(구) 인근 : 화개면 운수리 327-1,2(답)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161.0㎡ (또는 ㎡)

목적

진출입로

기간

2018.12 ~ 2023.12

점용·사용의 유형

진출입로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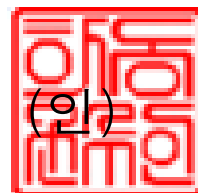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 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12월 03일

하 동 군 수 (인)



하동군 고시 제2018 - 193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신설한 지적기준점 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 지구명 : 안성지구, 신촌지구
- 점 수 : 지적삼감보조점 8점, 지적도근점 61점
- 지적기준점의 측량성과 보관장소 : 하동군청 민원과
- 문 의 : 하동군청 민원과 055-880-2083

2018년 12월 5일

하 동 군 수

■ 신설 지적삼각보조점

기준점 명칭	기준점 번호	토지소재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점	평면좌표		설치일자 (관측일자)	표지 재질	측량 성과 보관 장소	비고
			위도	경도	표고		X	Y				
삼각 보조점	보98	진교면 고이리 553	35-03-30.1	127-54-26.	84.196	중부	273947.3	282768.5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440	2997			38	80				지역
삼각 보조점	보99	진교면 고이리 385	35-03-19.	127-54-23.	56.244	중부	173639.0	282694.4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지역
			0325	6400			3	5				세계
삼각 보조점	보99	진교면 고이리 385	35-03-31.0	127-54-57.2	57.524	중부	273982.9	283552.5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지역
			664	452			32	05				세계
삼각 보조점	보100	진교면 고이리 267-1	35-03-19.9	127-54-54.5	29.560	중부	173674.6	283478.3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지역
			549	882			2	8				세계
삼각 보조점	보100	진교면 고이리 267-1	35-03-03.1	127-55-06.7	48.203	중부	273124.4	283802.4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지역
			365	947			00	24				세계
삼각 보조점	보101	진교면 송월리 320	35-02-52.0	127-55-04.1	20.250	중부	172816.0	283728.2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지역
			218	383			8	9				세계
삼각 보조점	보101	진교면 송월리 320	35-02-40.3	127-54-40.1	41.753	중부	272414.5	283133.5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지역
			026	481			04	41				세계
삼각 보조점	보101	진교면 송월리 320	35-02-29.1	127-54-37.4	13.823	중부	172106.1	283059.3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지역
			855	893			9	9				지역
삼각 보조점	보102	적량면 고절리 1272-21	35-04-03.3	127-46-56.8	36.093	중부	274874.0	271370.4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지역
			450	218			45	44				세계
삼각 보조점	보102	적량면 고절리 1272-21	35-03-52.2	127-46-54.1	8.269	중부	174565.8	271296.3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지역
			375	279			5	8				지역
삼각 보조점	보103	적량면 고절리 산138	35-03-56.5	127-47-30.7	175.465	중부	274671.1	272231.4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지역
			397	391			03	98				세계
삼각 보조점	보103	적량면 고절리 산138	35-03-45.4	127-47-28.0	147.633	중부	174362.8	272157.4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지역
			309	481			8	4				지역
삼각 보조점	보104	적량면 고절리 산126	35-03-37.8	127-47-21.7	107.885	중부	274093.6	272008.7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지역
			615	675			75	30				세계
삼각 보조점	보104	적량면 고절리 산126	35-03-26.7	127-47-19.0	80.063	중부	173785.4	271934.6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지역
			508	752			5	5				지역
삼각 보조점	보105	적량면 고절리 1179-4	35-03-41.4	127-47-00.8	36.125	중부	274201.1	271478.2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지역
			832	666			11	24				세계
삼각 보조점	보105	적량면 고절리 1179-4	35-03-30.3	127-46-58.1	8.310	중부	173892.9	271404.1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지역
			734	726			1	5				지역

■ 신설 지적도근점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토지소계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 점	평면좌표		설치일자	표지 재질	측량 성과 보관 장소	비고
			위 도	경 도	표 고		X	Y				
도근점	5219	진교면 고이리 1257	35-03-19.3 123	127-54-34.2 889	70.493	중부	273615.3 64	282974.0 78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3-08.1 996	127-54-31.6 298	42.544		173307.0 6	282899.9 4				지역
도근점	5220	진교면 고이리 산23-3	35-03-21.8 641	127-54-39.0 326	74.981	중부	273695.1 06	283093.5 73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3-10.7 516	127-54-36.3 739	47.029		173386.7 9	283019.4 4				지역
도근점	5221	진교면 고이리 439-2	35-03-20.3 613	127-54-44.1 107	98.101	중부	273649.9 65	283222.6 84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3-09.2 487	127-54-41.4 525	70.147		173341.6 5	283148.5 5				지역
도근점	5222	진교면 고이리 441-6	35-03-17.9 753	127-54-42.5 838	94.928	중부	273576.0 81	283184.6 61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3-06. 8624	127-54-39.9 254	66.976		173267.7 7	283110.5 3				지역
도근점	5223	진교면 고이리 456-29	35-03-14.7 057	127-54-42.0 925	88.103	중부	273475.2 04	283173.1 31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3-03.5 924	127-54-39.4 340	60.153		173166.8 9	283099.0 0				지역
도근점	5224	진교면 고이리 457-1	35-03-13.9 392	127-54-45.3 083	96.725	중부	273452.3 26	283254.8 43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3-02.8 258	127-54-42.6 501	68.775		173144.0 1	283180.7 1				지역
도근점	5225	진교면 고이리 산16-1	35-03-15.2 763	127-54-46.5 388	102.440	중부	273493.8 18	283285.6 51	2018.06. 11~12	향석 에 홈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3-04.1 631	127-54-43.8 807	74.488		173185.5 0	283211.5 1				지역
도근점	5226	진교면 고이리 산16-11	35-03-11.9 786	127-54-45.5 371	86.965	중부	273391.9 57	283261.1 96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3-00.8 650	127-54-42.8 789	59.0156		173083.6 4	283187.0 6				지역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토지소재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 점	평면좌표		설치일자	표지 재질	측량 성과 보관 장소	비고
			위 도	경 도	표 고		X	Y				
도근점	5227	진교면 고이리 산16-12	35-03-12.2 025	127-54-43.5 249	84.579	중부	273398.3 89	283210.1 38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3-01.0 889	127-54-40.8 665	56.630		173090.0 8	283136. 00				지역
도근점	5228	진교면 고이리 산18-14	35-03-11.4 164	127-54-42.3 431	81.477	중부	273373.8 90	283180.4 10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3-00.3 028	127-54-39.6 846	53.529		173065.5 8	283106.2 7				지역
도근점	5229	진교면 고이리 456-25	35-03-09.4 802	127-54-44.1 844	86.741	중부	273314.6 44	283227.6 17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2-58.3 663	127-54-41.5 261	58.793		173006.3 3	283153.4 8				지역
도근점	5230	진교면 고이리 456-25	35-03-09.1 490	127-54-44.6 667	86.739	중부	273304.5 51	283239.9 34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2-58.0 351	127-54-42.0 084	58.791		172996.2 4	283165.8 0				지역
도근점	5231	진교면 고이리 456-20	35-03-08.9 355	127-54-45.9 894	87.180	중부	273298.2 78	283273.5 14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2-57.8 216	127-54-43.3 312	59.232		172989.9 6	283199.3 8				지역
도근점	5232	진교면 고이리 456-37	35-03-08.2 70	127-54-46.9 20	86.114	중부	273277.9 84	283297.2 88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2-57.1 560	127-54-44.2 619	58.166		172969.6 7	283223.1 5				지역
도근점	5233	진교면 고이리 산14-1	35-03-09.2 626	127-54-47.8 442	81.338	중부	273308.7 88	283320.4 28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2-58.1 487	127-54-45.1 862	53.388		173000.4 7	283246.2 9				지역
도근점	5234	진교면 고이리 483	35-03-07.9 074	127-54-48.7 848	75.128	중부	273267.2 41	283344.6 47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2-56. 7933	127-54-46.1 269	47.180		172958.9 3	283270.5 1				지역
도근점	5235	진교면 고이리 484-1	35-03-08.3 406	127-54-50.2 579	69.393	중부	273280.9 35	283381.8 59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2-57.2 266	127-54-47.6 001	41.444		172972.6 2	283307.7 2				지역
도근점	5236	진교면 고이리 472	35-03-08.8 631	127-54-51.7 904	69.983	중부	273297.3 92	283420.5 50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2-57.7 491	127-54-49.1 327	42.033		172989.0 8	283346.4 1				지역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토지소재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 점	평면좌표		설치일자	표지 재질	측량 성과 보관 장소	비고
			위 도	경 도	표 고		X	Y				
도근점	5237	진교면 고이리 485-1	35-03-07.5 002	127-54-51.63 58	65.296	중부	273255.3 53	283417.0 15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2-56.3 861	127-54-48.97 81	37.347		172947.0 4	283342.8 8				지역
도근점	5238	진교면 고이리 1244	35-03-06.5 624	127-54-53.38 23	58.696	중부	273226.8 57	283461.5 41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2-55.4 482	127-54-50.72 48	30.746		172918.5 4	283387.4 0				지역
도근점	5239	진교면 고이리 산88-20	35-03-06.4 469	127-54-55.16 57	67.086	중부	273223.7 12	283506.7 70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2-55.3 327	127-54-52.50 83	39.135		172915.4 0	283432.6 3				지역
도근점	5240	진교면 고이리 492-7	35-03-06.0 162	127-54-57.18 07	58.620	중부	273210.9 09	283557.9 59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2-54.9 019	127-54-54.52 35	30.669		172902.5 9	283483.8 2				지역
도근점	5241	진교면 고이리 492-6	35-03-04.6 016	127-54-54.48 22	55.522	중부	273166.6 85	283489.9 71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2-53.4 872	127-54-51.82 47	27.573		172858.3 7	283415.8 3				지역
도근점	5242	진교면 고이리 산108	35-03-06.5 304	127-54-51.23 43	69.134	중부	273225.3 73	283407.1 15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2-55.4 162	127-54-48.57 66	41.185		172917.0 6	283332.9 8				지역
도근점	5243	진교면 고이리 483-1	35-03-06.7 938	127-54-48.03 63	84.633	중부	273232.7 48	283325.9 93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2-55.6 796	127-54-45.37 83	56.685		172924.4 3	283251.8 5				지역
도근점	5244	진교면 고이리 500-2	35-03-05.4 231	127-54-46.06 86	84.360	중부	273190.0 50	283276.5 14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2-54.3 088	127-54-43.41 04	56.414		172881.7 3	283202.3 7				지역
도근점	5245	진교면 고이리 499-2	35-03-04.1 963	127-54-50.83 44	62.717	중부	273153.3 48	283397.6 40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2-53.0 818	127-54-48.17 66	34.770		172845.0 3	283323.5 0				지역
도근점	5246	진교면 고이리 506-1	35-03-03.2 980	127-54-52.51 92	55.218	중부	273126.0 53	283440.5 92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2-52.1 834	127-54-49.86 16	27.271		172817.7 4	283366.4 5				지역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토지소재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 점	평면좌표		설치일자	표지 재질	측량 성과 보관 장소	비고
			위 도	경 도	표 고		X	Y				
도근점	5247	진교면 송원리 383	35-02-51.9 261	127-54-37.57 17	49.977	중부	272772.1 26	283064.9 71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2-40.8 103	127-54-34.91 27	22.041		172463.8 1	282990.8 3				지역
도근점	5248	진교면 송원리 265	35-03-00.1 904	127-54-37.68 55	54.579	중부	273026.8 43	283065.5 31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2-49.0 755	127-54-35.02 66	26.639		172718.5 3	282991.3 9				지역
도근점	5249	진교면 송원리 299-29	35-03-06.7 122	127-54-38.40 71	59.817	중부	273228.0 04	283081.9 85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2-55.5 981	127-54-35.74 83	31.873		172919.6 9	283007.8 4				지역
도근점	5250	진교면 고이리 1257	35-03-13.0 697	127-54-34.98 93	63.923	중부	273423.1 39	282993.5 81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3-01. 9563	127-54-32.33 02	35.976		173114.8 3	282919.4 4				지역
도근점	5251	적량면 고철리 산156	35-03-58.7 951	127-47-10.51 37	54.029	중부	274736.5 55	271718.4 71	2018.06. 11~12	PVC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3-47.6 870	127-47-7. 8210	26.202		174428.3 5	271644.4 1				지역
도근점	5252	적량면 고철리 953	35-03-55.4 148	127-47-12.60 35	48.923	중부	274632.7 99	271772.2 47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3-44.3 063	127-47-9. 9109	21.097		174324.5 9	271698.1 8				지역
도근점	5253	적량면 고철리 946-6	35-03-54.3 364	127-47-10.55 46	39.494	중부	274599.1 54	271720.5 92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3-43.2 278	127-47-7. 8618	11.670		174290.9 5	271646.5 3				지역
도근점	5254	적량면 고철리 1279-5	35-03-52.2 844	127-47-10.54 17	40.275	중부	274535.9 14	271720.7 64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3-41.1 756	127-47-7. 8489	12.451		174227.7 1	271646.7 0				지역
도근점	5255	적량면 고철리 924	35-03-51.9 897	127-47-12.15 08	53.380	중부	274527.1 53	271761.6 07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3-40.8 808	127-47-9. 4581	25.555		174218.9 4	271687.5 4				지역
도근점	5256	적량면 고철리 921-4	35-03-51.1 834	127-47-15.12 37	61.451	중부	274502.9 00	271837.1 33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3-40.0 743	127-47-12.43 13	33.626		174194.6 9	271763.0 7				지역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토지소재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 점	평면좌표		설치일자	표지 재질	측량 성과 보관 장소	비고
			위 도	경 도	표 고		X	Y				
도근점	5257	적량면 고절리 931-5	35-03-50.9 350	127-47-10.70 53	42.033	중부	274494. 359	271725. 236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3-39.8 260	127-47-8. 0125	14.210		174186.1 5	271651.1 7				지역
도근점	5258	적량면 고절리 844	35-03-49.9 192	127-47-10.06 75	44.305	중부	274462.9 29	271709.3 22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3-38.8 101	127-47-7. 3746	16.482		174154.7 2	271635.2 6				지역
도근점	5259	적량면 고절리 838	35-03-48.6 220	127-47-09.63 95	40.021	중부	274422.8 66	271698.7 92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3-37.5 128	127-47-6. 9465	12.199		174114.6 6	271624.7 2				지역
도근점	5260	적량면 고절리 848-1	35-03-48.2 868	127-47-11.92 35	51.568	중부	274412.9 91	271756.7 48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3-37.1 775	127-47-9. 2307	23.745		174104.7 8	271682.6 8				지역
도근점	5261	적량면 고절리 848-1	35-03-48.9 648	127-47-12.21 28	51.347	중부	274433.9 44	271763.9 14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3-37.8 556	127-47-9. 5201	23.524		174125.7 3	271689.8 5				지역
도근점	5262	적량면 고절리 914-4	35-03-49.8 754	127-47-13.53 77	55.294	중부	274462.2 71	271797.2 63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3-38.7 662	127-47-10.84 51	27.470		174154.0 6	271723.2 0				지역
도근점	5263	적량면 고절리 868-20	35-03-48.1 184	127-47-13.48 36	59.729	중부	274408.1 14	271796.3 20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3-37.0 090	127-47-10.79 09	31.907		174099.9 0	271722.2 5				지역
도근점	5264	적량면 고절리 868-20	35-03-47.7 138	127-47-13.27 91	59.721	중부	274395.6 04	271791.2 37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3-36.6 044	127-47-10.58 64	31.898		174087.3 9	271717.1 7				지역
도근점	5265	적량면 고절리 851	35-03-47.1 989	127-47-10.94 66	47.409	중부	274379.2 70	271732.2 59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3-36.0 895	127-47-8. 2537	19.587		174071.0 6	271658.1 9				지역
도근점	5266	적량면 고절리 812-1	35-03-46.5 181	127-47-10.20 74	43.961	중부	274358.1 41	271713.6 93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3-35.4 086	127-47-7. 5144	16.140		174049.9 3	271639.6 2				지역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토지소재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 점	평면좌표		설치일자	표지 재질	측량 성과 보관 장소	비고
			위 도	경 도	표 고		X	Y				
도근점	5267	적량면 고절리 857-2	35-03-46.4 917	127-47-11.93 69	55.374	중부	274357.6 73	271757.5 24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3-35.3 822	127-47-9. 2441	27.552		174049.4 6	271683.4 5				지역
도근점	5268	적량면 고절리 865-2	35-03-45.6 508	127-47-14.33 56	61.909	중부	274332.2 38	271818.5 10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3-34.5 411	127-47-11.64 29	34.087		174024.0 3	271744.4 4				지역
도근점	5269	적량면 고절리 868-17	35-03-46.6 973	127-47-15.03 22	68.980	중부	274364.6 29	271835.9 07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3-35.5 878	127-47-12.33 96	41.157		174056.4 2	271761.8 4				지역
도근점	5270	적량면 고절리 909	35-03-47.8 281	127-47-16.21 97	69.845	중부	274399.7 14	271865.7 22	2018.06. 11~12	PVC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3-36.7 187	127-47-13.52 73	42.021		174091.5 0	271791.6 5				지역
도근점	5271	적량면 고절리 868-24	35-03-47.6 024	127-47-18.44 72	79.283	중부	274393.2 06	271922.2 20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3-36.4 929	127-47-15.75 49	51.459		174084.9 9	271848.1 5				지역
도근점	5272	적량면 고절리 881-4	35-03-48.0 162	127-47-20.69 91	90.227	중부	274406.4 08	271979.1 80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3-36.9 067	127-47-18.00 70	62.402		174098.1 9	271905.1 1				지역
도근점	5273	적량면 고절리 산130-6	35-03-47.9 184	127-47-23.28 33	105.318	중부	274403.9 13	272044.6 85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3-36.8 088	127-47-20.59 15	77.492		174095.6 9	271970.6 2				지역
도근점	5274	적량면 고절리 산130-1	35-03-47.8 227	127-47-25.60 55	117.054	중부	274401.4 30	272103.5 50	2018.06. 11~12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3-36.7 130	127-47-22.91 39	89.227		174093.2 1	272029.4 8				지역
도근점	5275	적량면 고절리 1284	35-03-42.7 255	127-47-06.83 38	33.904	중부	274240.5 87	271629.1 29	2018.06. 11~12	멘홀 태두리 각인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3-31.6 157	127-47-4. 1404	6.085		173932.3 8	271555.0 5				지역
도근점	5276	적량면 고절리 1284	35-03-45.8 008	127-47-06.42 24	32.995	중부	274335.2 79	271617.9 58	2018.06. 11~12	멘홀 태두리 각인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3-34.6 913	127-47-3. 7291	5.176		174027.0 7	271543.8 9				지역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토지소재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 점	평면좌표		설치일자	표지 재질	측량 성과 보관 장소	비고
			위 도	경 도	표 고		X	Y				
도근점	5277	적량면 고절리 825-6	35-03-48.4 894	127-47-06.00 53	36.486	중부	274418.0 54	271606.7 38	2018.06. 11~12	표철	하동	세계
			35-03-37.3 802	127-47-3. 3120	8.665		174109.8 5	271532.6 7			민원과	지역
도근점	5278	적량면 고절리 933-1	35-03-51.6 939	127-47-05.74 83	37.158	중부	274516.7 60	271599.4 47	2018.06. 11~12	표철	하동	세계
			35-03-40.5 851	127-47-3. 0551	9.336		174208.5 5	271525.3 8			민원과	지역
도근점	5279	적량면 고절리 1272-8	35-03-55.1 716	127-47-04.34 0	37.283	중부	274623.6 55	271562.9 21	2018.06. 11~12	표철	하동	세계
			35-03-44.0 632	127-47-1. 6467	9.460		174315.4 5	271488.8 6			민원과	지역

하동군 고시 제2018 - 194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7. 9. 21.>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성명 하 동 군 수 주소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614-83-00025	(전화번호 : 055-880-2443)

점용 (행위) 개요	하천의 명칭 섬진강(국가하천)
	점용(행위)위치 하동군 하동읍 신기리, 목도리 일원 (면적 : 4,784㎡)
	점용(행위)목적 섬진강 물아래 고향포구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의 점용
	지구지정현황(하천법제44조) 복원구역
	점용(행위)기간 2018 년 12월 1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변경내용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변경)신청합니다.

2018 년 11 월 일

신청인 하 동 군 수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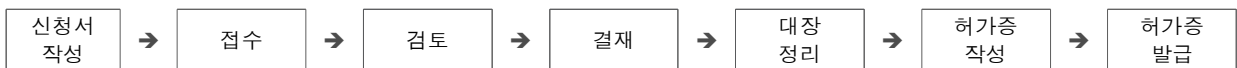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비고	점용목적은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별로 그 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변경내용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신청 할 경우에만 적습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하동군 공고 제2018 - 1184호

하동군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하동군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04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2. 제안 이유

사회공헌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여건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군민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제1조)

나. 사회공헌의 정의 및 군의 책무(제2, 3조)

다. 사회공헌 시책 내용(제4조)

라. 사회공헌장 수여 근거 마련(제5조)

1) 나눔부분 : 물질 자원을 주로 이용하여 사회공헌한 자

2) 섬김부분 : 인적 자원을 주로 이용하여 사회공헌한 자

3) 배움부분 : 물질 자원과 인적 자원의 결합을 통해 사회공헌한 자

- 마. 사회공헌장 추천을 사회공헌자, 사회복지법인 대표 및 복지시설의 장, 사회공헌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바. 사회공헌위원회의 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 선정 및 공헌시책 심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사. 해마다 사회공헌주간을 설정하여 사회공헌장 수여토록 함(제8조)
- 사. 사회공헌장 수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제9조)
- 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공헌장을 받은 경우 환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0조)

4. 의견 제출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8년 12월 24일까지 하동군(참조 : 주민행복과, 전화 880-2343, FAX 880-2349, e-mail siva25@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붙임 1. 하동군 사회공헌 진흥 및 진원 조례 제정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 2.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하거나 자원봉사 또는 사회봉사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군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 여건을 조성·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공헌시책)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관련 군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사회공헌관련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사회공헌 자료의 수집 및 홍보
4.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회공헌장) ① 군수는 사회공헌 실적이 뚜렷한 사회공헌자에게 다

음 각 호의 사회공헌장을 수여할 수 있다.

- 1. 나눔부문 : 물적 자원을 주로 이용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 한 자
- 2. 섬김부문 : 인적 자원을 주로 이용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 한 자
- 3. 베품부문 :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결합을 통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자

② 군수는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각 호에서 정한 부문별 사회공헌장의 명칭은 “사회공헌장”으로 하며, 그 제식 및 규격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의 추천 등) ① 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회공헌자 본인
-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3. 사회공헌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 4. 군 소속기관(국·담당관·과·소, 읍·면을 포함한다)의 장
- 5. 군민 10명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의 추천에 따른 세부사항은 군수가 해마다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자를 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로 선정하려면 제7조에 따른 하동군 사회공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사회공헌위원회) ① 군수는 사회공헌사업의 자문을 위하여 하동군 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4조에 따른 사회공헌시책에 관한 사항
- 2. 제6조에 따른 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의 선정

3.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정한 대표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⑥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사회공헌주간) 군수는 해마다 사회공헌주간(週間)을 설정하여 사회공헌장을 수여하고 사회공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사회공헌장 수상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공헌장 수상자에 대한 홍보
2. 군 주요행사 초청, 군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지급
3. 그 밖에 사회공헌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사회공헌장 수여일부 터 3년으로 한다.

제10조(사회공헌장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로부터 그 사회공헌장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사회공헌자가 기업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예우는 위원회의 심의 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수 및 지원을 중단 하려면 사전에 해당 사회공헌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2018 - 1192호

하동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5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2. 폐지 이유 :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동일한 상위법령에 대하여 분리운영 되고 있는 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 조례 운영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하동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함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8년 12월 25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 880-2318, FAX 880-2159, mini6314@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 하동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폐지조례안(별표)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하동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2018 - 1193호

하동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5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2. 폐지 이유 :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동일한 상위법령에 대하여 분리운영 되고 있는 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 조례 운영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하동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8년 12월 25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 880-2318, FAX 880-2159, mini6314@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 하동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폐지조례안(별표)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하동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2018 - 1194호

하동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영유아 보육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5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영유아 보육 조례
2. 제안 이유 :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동일한 상위법령에 대하여 분리운영 되고 있는 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 조례 운영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하동군 영유아 보육 조례」를 제정함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8년 12월 25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 880-2318, FAX 880-2159, mini6314@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 하동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별표)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하동군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4조(설치) 군수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하동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이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⑥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위원이 영 제1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

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설치) 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한다.

제12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영 제21조에서 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이 개인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한다.

②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야 하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군청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며,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서 규정한 심의항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②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평가실적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으로 수탁

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조례 및 계약에서 정한 사항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그 권리의 양도·전대 및 시설의 구조변경 또는 사용목적의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에는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등을 멸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손해의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시설 등에 대하여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 ⑤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⑥ 수탁자는 어린이집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⑦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준수 하여야 한다.

- 제15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
 3.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다고 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제13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장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제17조(임면) ①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 시 군수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다만,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군수가 임면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의 보육교직원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기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시설의 보육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1. 보육아동 수 감소 및 예산 사정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 할 경우
2. 해당 보육교직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및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의 직무태만, 아동학대 행위 등으로 보육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18조(전보) 군수는 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제19조(임기)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보수 및 퇴직금) 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연도별 「보육사업안내」 지침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르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 원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운용·관리해야 한다.

제22조(교육)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과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보조금의 지급 등

제23조(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2. 어린이집 유지·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4. 보육사업 관련 행사 비용
5. 보육교직원 교육·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6.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
7. 그 밖에 영유아의 활성화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 1.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보육 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 2. 평가인증시설, 평가우수시설 또는 취약보육을 제공하는 경우
- ③ 관련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4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 4.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제6장 어린이집의 지도 및 감독

제25조(지도·명령) 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명령을 할 수 있다.

제26조(보고·검사) ① 군수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제27조(준용) 보육에 관하여 법령이나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경상남도 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다음과 같이 각각 폐지한다.

1. 하동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2. 하동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동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군수가 임명한 시설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한 어린이집 원장으로 본다. 다만, 제19조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하동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하동군 공고 제2018-1198호

하동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6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2. 제안 이유 :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법령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가. 상위 법령 변경 사항 반영(안 제1조, 제2조, 별표 1)
 - 나. 상위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항 삭제(안 제8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8년 12월 26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지원국 행정과 아동청소년 담당, 전화880-2320, FAX 880-2159, e-mail khb1285@korea.kr)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규칙 제2018-1198호

하동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를 “「청소년 보호법」 제49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2조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반행위별 포상금지급기준(제7조 관련)

위반행위	지급액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接客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4호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위 사항 외에 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5만원

신 · 구조문대비표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청소년 보호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_____</p> <p>_____</p> <p>2. "청소년 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 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p> <p>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u>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u>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p>	<p>제1조(목적) ----- 「<u>청소년 보호법</u>」 제49조----- ----- ----- ----- ----- ----- ----- ----- -----</p> <p>제2조(정의) ----- ----- ----- ----- ----- ----- ----- -----</p> <p>2. -----이 ----- ----- ----- ----- ----- ----- -----</p> <p>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u>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u></p>
--	--

하동군 공고 제2018-1150호

▶ 2018년 하동군 지방일반임기제(6·7급상당) 공무원 ◀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하동군 공고 제2018 - 1095호에 의거 시행한 2018년 제6회 하동군 임기제공무원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최종합격자

알프스하동종합복지관 관장, 사무국장	지방일반임기제 급상당	합격자 없음
	지방일반임기제 급상당	

2. 신규임용 후보자 등록

- 가. 등록일시 : 2018. 11. 23(금) 09:00~18:00까지
- 나. 등록장소 : 하동군청 행정과 ☎055-880-2153
- 다. 제출방법 : 아래 제3항의 제출서류를 본인이 직접 등록

3. 제출서류

- 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등록시 배부, 3×4 사진부착) 1통
- 나. 주민등록초본 1통(병역사항이 기록된 것)
- 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1통
- 라. 최종 학력증명서 1통
- 마.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통
- 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사. 신원진술서(사진 부착) 3통

아. 사진 3매(명함판 상반신 탈모, 5*7 2매, 3*4 2매)

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4. 유의사항

가. 임용후보자 등록 시 신분증과 인장을 필히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등록을 하여야 하며, 만약 등록기간내에 등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나. 최종합격이 결정된 자라도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한 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다. 기타 임용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청 행정과(055-880-21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서 식 4종(임용후보자등록원서, 신원진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7.2.22.>

※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사 진] 사진파일 가능 (3cm×4cm) · (3.5cm×4.5cm)
등록기준지						
주 소						
실거주지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연 락 처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국 적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	<input type="checkbox"/> 복수국적 국가명:	<input type="checkbox"/> 외국국적 국가명:	배우자 및 자녀 국적		
특 기	취 미		자격증			
재 산	본인 및 배우자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미혼 자녀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정당·사회 단체 활동	<input type="checkbox"/> 있음	단 체 명		기 간	직 책	
	<input type="checkbox"/> 없음			. . ~ . .		
병 역	본 인	군 별	병 과	최종 계급	기 간	미필 사유
	자 (성명)				. . ~ . .	
	자 (성명)				. . ~ . .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공 학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경 력	기관 또는 업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벌 관계(일자)
			. . ~ . .		
			. . ~ . .		
			. . ~ . .		
해외 거주 사실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 ~ . .		
			. . ~ . .		
가족 관계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직 업·직 책	거 주 지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 부모					
북한 거주 가족					
친교 인물	관 계	성 명	직 업·직 책	연 락 처	

1.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별지 서식] <개정 2011.9.29>

(앞쪽)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구 분	② 시험실시 기관	③ 응시직명	④ 응시번호	⑤ 성 명	(한 자) ()	사 진 (3cm × 4cm) ※ 압인 또는 계인
⑥ 검사 시						
⑦ 재 사 용				⑧ 주민등록번호		

검 사 내 용

키	cm	체 중	kg
가슴둘레	cm	혈 압	
(교정)시력	좌: () 우: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좌: () 우: ()
안 질 환		이비인 후 질 환	
치 아		호 흡 기 질 환	
간 질 환		신 경 질 환	
소 화 기 질 환		피 부 질 환	
순 환 기 질 환		정 신 질 환	
비 뇨 기 질 환		혈청검사(매독)	
흉부 X선 검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인)

검사 결과	[] 합 격	불합격 또는 합격 사유
합격 여부	[] 불 합 격	
	[] 판 정 보 류	
판정 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의 장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
------	----------

210mm×297mm(보존용지 80g/㎡)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 (예: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기입한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 2. “검사 내용” 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 “양호” ,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함
 -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 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함
-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 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만성골수성백혈병’ 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를 하여 감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에 해당하지 않음
 - 나. 불합격 사유 기재의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왼쪽 0.1, 오른쪽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 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 ※ 판정 보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하동군 공고 제2018-1157호

하동군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자체감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자체감사 규칙

2. 제안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 권고안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자체감사의 범위에 의회사무과를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회사무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으로 포함시켜 감사대상 기관을 명확하게 함

“제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조의 2(감사 대상기관) 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본청, 직속기관(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읍·면, 의회사무과
- “제14조를 삭제한다.”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8년 12월 7일까지 하동군(기획예산담당관, 전화 055-880-2033, FAX 055-880-2019, 이메일 dove1564@korea.kr) 으로 【별지 서식】 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안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하동군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 2(감사 대상기관) 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본청, 직속기관(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읍·면, 의회사무과
2. 군 출자·출연기관 및 보조단체
3. 군의 사무 및 시설물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p><신 설></p>	<p>제2조의 2(감사 대상기관) 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 본청, 직속기관(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읍·면, 의회사무과 2. 군 출자·출연기관 및 보조단체 3. 군의 사무 및 시설물을 위탁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p>제14조(준용규정) 읍면의 자체감사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p>	<p><삭 제></p>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군” 을 “하동군(이하 “군”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감사 대상기관) 하동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실시하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본청, 직속기관(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읍·면, 의회사무과
2. 군 출자·출연기관 및 보조단체
3. 군의 사무 및 시설물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p>제2조(타 규정과의 관계) <u>군</u> 자체감사는 법령, 조례나 다른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p> <p><u><신 설></u></p> <p>제14조(준용규정) <u>읍면의 자체감사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u></p>	<p>제2조(타 규정과의 관계) <u>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u> -----</p> <p>-----.</p> <p>제2조의2(감사 대상기관) <u>하동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실시하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군 본청, 직속기관(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읍·면, 의회사무과</u> 2. <u>군 출자 · 출연기관 및 보조단체</u> 3. <u>군의 사무 및 시설물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u> 4. <u>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u> <p><u><삭 제></u></p>
---	---

하동군 공고 제 2018-1206호

2018년 환경개선부담금 2기분 독촉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18년 환경개선부담금 2기분 독촉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8년 12월 07일

하 동 군 수

1. 제 목 : 2018년 환경개선부담금 2기분 독촉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18. 12. 07. ~ 2018. 12. 22. (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별첨” 참조
5. 공고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고지서교부 및 기타문의 : 하동군청 환경보호과 (☎ 055-880-2564)

주 소		납부자명	차량번호	부 과 금	반송사유
사천시	사천읍경서대로	(주)강*투어여행사	경남72바 9734	96,820	반송함투여
사천시	사천읍경서대로	(주)강*투어여행사	경남72바 9740	96,820	반송함투여
하동군	북천면 남포정자길	이철*	57모9119	19,350	반송함투여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로40길, 효성스포렉스 1층	(주)와이지개*	82버6435	32,080	수취인불명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강서*	97머9832	17,530	수취인불명
하동군	금남면 신노량길	강성*	95서5264	33,880	수취인불명
하동군	악양면 입석길	강영*	88라5957	25,420	수취인불명
하동군	악양면입석길	강영*	경남7모 3195	18,140	수취인불명
하동군	하동읍신기공항길	강진*	95고2827	24,200	수취인불명
하동군	하동읍연화길	건설노조하동지* (대표:신원*)	72루3965	22,530	수취인불명
하동군	적량면 신촌길	권용*	06너2841	13,350	수취인불명
하동군	하동읍 중서1길	김광*	31나6021	15,910	수취인불명
하동군	적량면 황금길	김기*	17마7735	19,360	수취인불명
하동군	하동읍경서대로	김미*	88저2523	33,880	수취인불명
하동군	횡천면문화1길	김봉*	07버8195	19,360	수취인불명
하동군	적량면신촌길	김상*	80거4189	25,420	수취인불명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김억*	경북81노 4793	25,420	수취인불명
하동군	하동읍 부두길	김영*	96무7187	18,140	수취인불명
하동군	진교면 상평1길	김영*	11나3810	18,580	수취인불명
하동군	금성면금성중앙길	김완*	31너5126	19,360	수취인불명
하동군	진교면민다리길	남진*	39도5586	33,880	수취인불명
하동군	청암면청학로	노철*	72나3514	96,820	수취인불명

하동군	청암면청학로	노철*	84서6898	17,530	수취인불명
하동군	횡천면원곡길	녹색제작원영농조합 법*	11두8291	11,360	수취인불명
하동군	횡천면원곡길	녹색제작원영농조합 법*	28러8634	13,470	수취인불명
하동군	고전면지소1길	농업회사법인(주)더 좋은농*	47저6874	19,360	수취인불명
하동군	하동읍경서대로	대한개발 주식회*	경남81무 2997	33,880	수취인불명
하동군	금남면 진정2길	박경*	부산80로 9398	18,140	수취인불명
하동군	악양면 신흥길	박명*	90누1442	17,040	수취인불명
하동군	하동읍매화골먹점길	박원*	경남47나 4451	33,880	수취인불명
하동군	적량면 상동산길	박윤*	87두4921	33,880	수취인불명
하동군	하동읍 향교1길	박정*	경남80무 6789	33,880	수취인불명
하동군	하동읍동광길	봉성*	37누4179	19,360	수취인불명
하동군	하동읍군청로	세양정보통*(주)	경남81무 2488	33,880	수취인불명
하동군	고전면조간너리길	신철*	경남80두 3126	18,140	수취인불명
하동군	하동읍부두길	안부*	경남47나 2650	17,770	수취인불명
하동군	진교면민다리안길	엄종*	경남71라 9050	51,110	수취인불명
하동군	진교면민다리안길	엄종*	경남71라 9045	51,110	수취인불명
하동군	하동읍부용길	여태*	95가6835	17,270	수취인불명
하동군	횡천면구학길	오영*	21우4280	19,360	수취인불명
하동군	횡천면구학길	오영*	경남90자 8315	33,880	수취인불명
하동군	하동읍 연화길	우량종합건*(주)	85가9484	87,130	수취인불명
하동군	진교면 상평1길	유영*	18루1424	24,200	수취인불명
하동군	횡천면 경서대로	이명*	98수8724	96,820	수취인불명
하동군	하동읍경서대로	이민*	71부5070	33,880	수취인불명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	이병*	89소8488	25,420	수취인불명
하동군	적량면한옥정길	이씨*(주)하동지점	96무7089	33,880	수취인불명
하동군	하동읍경서대로	이은*	경남81무 1760	24,200	수취인불명
하동군	하동읍중앙2길	이인*	89버8365	18,290	수취인불명
하동군	옥종면옥수로	임현*	49부8928	12,530	수취인불명
하동군	옥종면옥종중앙길	임현*	97거2655	23,370	수취인불명
하동군	적량면공월길	장창*	경남80누 7051	20,780	수취인불명
하동군	금성면명덕길	전명*	부산80모 7303	25,420	수취인불명
하동군	적량면공설운동장로	정규*	경남81무 3300	33,880	수취인불명
하동군	금남면대도길	정용*	96우6041	18,140	수취인불명
하동군	악양면악양서로	정재*	17거4737	19,360	수취인불명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정재*	경남70너 3976	33,880	수취인불명
하동군	옥종면 북방우회길	정충*	경남80무 1750	18,140	수취인불명
하동군	금남면한재길	정한*	82오3591	18,140	수취인불명
하동군	하동읍소재1길	지산건*(주)	경남81무 2000	24,200	수취인불명
하동군	하동읍 산복2길	최용*	경남81무 4412	25,420	수취인불명
하동군	옥종면세종태실로	한국조경수협회경남 조경수*	97가3650	24,200	수취인불명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한달*	10가5940	24,200	수취인불명
하동군	하동읍 향교1길	한병*	97나1170	25,420	수취인불명
하동군	금남면한재길	황남*	경남70나 1345	33,880	수취인불명
하동군	진교면 갑정길	황영*	96부8326	33,880	수취인불명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35번 길	대흥건*(주)	경남8더 3614	24,200	이사감
고성군	고성읍성내로135번	조양건*	경남81무	24,200	이사감

	길		1543		
서울시 서초구	연남20길	(주)태화이엔*	79버7668	33,820	이사감
하동군	고전면신월길	(유)하성건*	경남81무 6471	33,880	이사감
하동군	고전면신월길	(유)하성건*	경남81무 6465	33,880	이사감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유)해동기*	경남71라 1576	33,880	이사감
하동군	하동읍중앙1길	(주)가람조*	경남81무 2813	33,880	이사감
하동군	하동읍중앙1길	(주)가람조*	경남47가 4466	24,200	이사감
하동군	진교면 달구지길	(주)경남아스*	경남82가 1525	24,200	이사감
하동군	진교면달구지길	(주)경남아스*	경남82가 2611	24,200	이사감
하동군	청암면청학로	(주)농협샘*	경남71라 1642	33,880	이사감
하동군	옥종면 미산길	(주)동명산*	경남8코 2847	24,200	이사감
하동군	하동읍나루터길	(주)서경렌트*	73허4701	22,530	이사감
하동군	금성면새동네길	(주)석*	95고3556	24,200	이사감
하동군	금성면가덕리	(주)석*	99거2532	52,410	이사감
하동군	금성면가덕리	(주)석*	91소9993	33,880	이사감
하동군	금성면가덕리	(주)석*	경남99사 1505	63,650	이사감
하동군	금성면가덕리	(주)석*	26주5855	31,540	이사감
하동군	진교면구고속도로	(주)우정랜드산*	81더7166	33,880	이사감
하동군	진교면구고속도로	(주)우정랜드산*	97나1650	51,110	이사감
하동군	진교면진양로	(주)우진산*	21나8766	24,200	이사감
하동군	금성면궁항리	(주)정원글로*	87두9875	87,130	이사감
하동군	금성면산업로	(주)정원글로*	85도0586	96,820	이사감
하동군	금성면 산업로	(주)정원글로*	97너9797	87,130	이사감
하동군	하동읍읍내리	(주)평화토*	경남47가	24,200	이사감

			6249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주)풍성산*	경남71라 2594	24,200	이사감
하동군	진교면관곡리	(주)하동고속관*	79버7806	96,820	이사감
하동군	금남면대왕골길	(주)하이랜*	경남47나 2857	33,880	이사감
하동군	금성면금성중앙길	(주)한아*	경남8스 8045	87,130	이사감
하동군	금성면금성중앙길	(주)한아*	96부1091	33,880	이사감
하동군	하동읍시장2길	강경*	94서5122	24,200	이사감
하동군	화개면쌍계로	강경*	97러8372	25,420	이사감
하동군	화개면쌍계로	강경*	19주4692	19,360	이사감
하동군	하동읍 나루터길	강권*	경남81무 1655	18,140	이사감
하동군	청암면 하존길	강영*	49부5233	19,360	이사감
하동군	청암면하존길	강영*	95주9343	24,200	이사감
하동군	악양면 회남재로	강정*	경남80두 6462	25,420	이사감
하동군	금남면 금정길	강희*	40수9595	33,880	이사감
하동군	하동읍화심길	권영*	96루6451	33,880	이사감
하동군	하동읍시장2길	규창건*(주)	97나1423	24,200	이사감
하동군	진교면소전방길	김기*	70너2145	33,880	이사감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김두*(삼화페인트)	경남81무 6121	25,420	이사감
하동군	양보면수척길	김문*	경남70구 2575	6,680	이사감
하동군	양보면원양샘골길	김민*	96주3242	25,420	이사감
하동군	금남면섬진강대로	김성*	93다8735	17,090	이사감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김성*	07어3511	24,200	이사감
하동군	악양면평사리길	김수*	39조9119	33,880	이사감
하동군	청암면청학로	김윤*	48어1059	33,880	이사감

하동군	옥종면내촌길	김의*	47거8183	33,880	이사감
하동군	악양면 증기길	김일*	64소3088	24,200	이사감
하동군	횡천면마치길	김재*	92서6072	25,420	이사감
하동군	횡천면마치길	김재*	09너6463	33,880	이사감
하동군	화개면 목압길	김종*	경남81무 3511	25,420	이사감
하동군	하동읍중앙로	김종*	23다0628	13,070	이사감
하동군	하동읍화심길	김종*	경남45가 7882	18,310	이사감
하동군	고전면하동읍성로	김주*	85거0331	23,830	이사감
하동군	고전면하동읍성로	김주*	경남82나 1912	25,420	이사감
하동군	화개면 부촌길	김하*	92리4143	24,200	이사감
하동군	진교면평당길	김홍*	경남80루 9046	24,200	이사감
하동군	양보면수척길	김회*	경남80구 2743	25,420	이사감
하동군	고전면재첩길	남성건*(주)	경남80루 8839	33,880	이사감
하동군	북천면상촌길	농업회사(법)덕유팜 이엔*(주)	03조4458	33,880	이사감
하동군	옥종면옥단로	동남연와산*(주)	경남7도 4412	87,130	이사감
하동군	화개면부촌길	명휘*	경남80루 3031	25,420	이사감
하동군	진교면발꾸미길	문승*	부산8누 4294	22,350	이사감
하동군	진교면발꾸미길	문승*	97나1581	31,300	이사감
하동군	하동읍 소재2길	박금*	35소4717	19,360	이사감
하동군	고전면 백석길	박금*	경남47나 3950	19,360	이사감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박지*	91머3620	33,880	이사감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박지*	37무2401	20,580	이사감
하동군	진교면대전방길	박형*	54소9614	19,360	이사감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박환*	경기33마 6506	33,870	이사감
하동군	금남면 노량해안길	배희*	97보2659	33,880	이사감
하동군	금성면 나팔중앙길	백대*	97너4535	18,140	이사감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백산전력주식회*	41두5713	19,360	이사감
하동군	진교면 하평안길	소철*	95로4475	17,440	이사감
하동군	진교면 하평안길	소철*	84너3713	19,380	이사감
하동군	하동읍 나루터길	송종*	94다4960	10,150	이사감
하동군	금성면 산업로	신설건설주식회*	90어7751	24,200	이사감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안경*	경남99바 7586	24,200	이사감
하동군	하동읍 나루터길	안경*	99부7323	24,200	이사감
하동군	진교면 금오산길	오미*	94로0146	13,060	이사감
하동군	적량면 안성길	오태*	경남7러 1452	18,140	이사감
하동군	적량면 안성길	오태*	97나1722	18,140	이사감
하동군	적량면 안성길	오태*	경남7느 1520	18,140	이사감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도로	우정조*(주)	97나1300	51,110	이사감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우주통*(주)	경남99바 9193	96,820	이사감
하동군	금남면 사궁길	유말*	경남70가 1518	24,200	이사감
하동군	금남면 사궁길	유말*	경남82가 3646	33,880	이사감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유인*외1인유인*	80로4182	24,190	이사감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유한회사현도건*	97나1949	24,200	이사감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유한회사현도건*	97나1912	19,310	이사감
하동군	금성면 가린길	윤균*	86노6425	33,880	이사감
하동군	금남면 동산길	이기*	97서1400	25,420	이사감

하동군	하동읍하마길	이란*	86거7849	33,880	이사감
하동군	양보면 가락길	이병*	경남81무 4208	19,360	이사감
하동군	화개면의신길	이순*외1인(노환*)	97나1766	24,200	이사감
하동군	고전면월진길	이승*	84가6419	19,090	이사감
하동군	하동읍나루터길	이응*	97나2550	18,140	이사감
하동군	하동읍화심길	이재*	97오8244	18,140	이사감
하동군	고전면궁단로	이정*	83저5424	18,310	이사감
하동군	고전면궁단로	이정*	부산8라 9870	24,200	이사감
하동군	금남면대도길	이충*	96버8489	23,650	이사감
하동군	약양면 덕기길	임현*	95머1479	25,420	이사감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전유*	05노4490	24,200	이사감
하동군	옥종면덕천로	정나*	94수6688	33,880	이사감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정덕*	84나7287	18,140	이사감
하동군	하동읍경서대로	정만*	경남5나 6988	24,200	이사감
하동군	적량면상동산길	정명*	92너8814	24,190	이사감
하동군	적량면상동산길	정명*	97거2180	24,190	이사감
하동군	금성면 산업로	정상*	97거2267	6,280	이사감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안길	정석*	경남71라 2475	24,200	이사감
하동군	금남면달구목길	정준*	65노2460	24,200	이사감
하동군	금성면연막중앙길	정찬*	84서9276	17,530	이사감
하동군	횡천면문화1길	정창*	82구4170	19,360	이사감
하동군	진교면 상평길	정현*	04누8448	33,880	이사감
하동군	고전면 잔너리길	조기*	경남8즈	18,140	이사감

			1612		
하동군	고전면잔너리길	조기*	경남81무 2588	25,420	이사감
하동군	진교면민다리길	조동*	96무8792	25,420	이사감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	조동*	51라8022	8,550	이사감
하동군	화개면 원탑1길	조연*	96무7414	24,200	이사감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조외*	96우8247	33,880	이사감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조외*	64머9866	24,200	이사감
하동군	옥종면원해길	조용*	97거5210	25,410	이사감
하동군	금남면 영천안길	조정*	97거5909	5,100	이사감
하동군	금남면영천안길	조정*	84저8536	25,420	이사감
하동군	하동읍 시장2길	주식회사송*	04부2022	19,350	이사감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도로	주식회사우정랜드산 *	97버4250	49,350	이사감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도로	주식회사우정랜드산 *	97나1866	33,880	이사감
하동군	금성면길목길	진승*	11나7124	19,360	이사감
하동군	진교면들포길	천상*	89다1568	25,420	이사감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도로	천왕영농조합법*	97더6576	33,880	이사감
하동군	양보면서제길	최재*	57우2717	33,880	이사감
하동군	악양면 정동상신길	최정*	95고5224	23,370	이사감
하동군	금성면향도길	최종*	경남82거 1674	25,420	이사감
하동군	악양면신흥길	최현*	04라7266	24,200	이사감
하동군	하동읍 시장2길	하남축산영농조*	경남81무 1567	24,200	이사감
하동군	금남면 경충로	하남토*(주)	경남80루 5951	51,110	이사감
하동군	적량면공설운동장로	하인*	81가7493	26,950	이사감
하동군	하동읍부두길	하종*	33루3229	24,200	이사감

하동군	금남면작은삼내길	하종*	18마5860	18,520	이사감
하동군	금남면 작은삼내길	하종*	82저7224	16,900	이사감
하동군	금성면서근속등길	한기*	87루3014	25,420	이사감
하동군	옥종면 옥종중앙길	한창*	93나2074	25,420	이사감
하동군	진교면송원리	합자회사진교기업농 업회*	경남81무 1675	24,200	이사감
하동군	금남면달구목길	황규*	84라1029	25,420	이사감

하동군 공고 제 호

공립 천년나무어린이집 원장 모집 공고

공립 천년나무어린이집 원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하 동 군 수

채용분야 및 인원 원장 명

천년나무어린이집 현황

어린이집명	소재지	시설규모	보육정원	종사자수	비고
천년나무 어린이집	하동읍 읍내리 번지		명	명	

근무조건

- 가 신 분 천년나무어린이집 원장
- 나 보 수 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에 의함
년 월 급여에 한하여 최저임금 지급
- 다 근무시간 주 일
- 라 근무처 천년나무어린이집
- 마 근무기간 년간

응시자격

가 일반요건

지방공무원법 제 조와 영유아보육법 제 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자격

영유아보육법 제 조 제 항 및 동법시행령 제 조 별표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기준을 갖춘 자

최근 년이내 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등을 받지 않은 자

다 거주지 제한 해당없음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공고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목 월 까지	화 개별통지	금 예정	군청 소회의실 군청 층	월 개별통지

가 접수장소 하동군청 행정과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 택배 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신청서는 하동군 홈페이지 [_____](#) 고시 공고 란에서 다운받아 활용

시험방법

가 차 시험 서류전형

나 차 시험 면접심사 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다 최종합격자 결정 서류전형과 면접심사의 점수 합산으로 결정

라 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부 소정양식

나 이력서 증명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 각 부

다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원장 자격증 원본 경력증명서 부

라 주민등록등본 최근 전입일자 기재 부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부

바 보육사업 관련 표창장 및 상장 공공기관의장

사 최근 년간 봉사활동실적 확인서 까지 실적

아 기타 해당 분야 증명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행정과 아동청소년담당부서 에
문의 바랍니다

(붙임4)

응 시 원 서

응시분야	원 장	성 명	한글	성별	사 진 최근 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cm
※응시번호	주민등록 번호		한문	남 여	
	연 락 처	전 화 휴대폰			
주 소					
최 종 출신학교	고등학교	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대 학 교	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대 학 원	년 월 일	학교	대학원	년 졸업
보 육 총경력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원 장 경 령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2018년 천년나무어린이집 원장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취소 또는 임용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8년 12월 일

응시자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 (절취선) -----

응 시 표				사 진 최근 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cm
응시분야	원 장	성 명		
※응시번호		생년월일		
		년 월 일	하 동 군 수	

※ 주의사항 응시표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경우 사진 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판인 것 매를 지참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자필로 다음 요령에 의하여 정자로 기재해야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잘못 기재할 경우 합격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기재한다.
2. 주소 :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한다.
3. 성명 : 정자로 기재하며 한글과 한자로 기재한다.
4. 주민등록번호 : 정자로 주민등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5. 『※』 응시번호 표시란 : 응시자는 기록하지 마세요.

이 력 서

사 진
응시원서
사진과 동일
원판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주민등록 번호	
주 소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전공 학위
경 력	기 간	근 무 처 부 서	직 위 급	업 무 내 용
자 격 사 항	취 득 년 월 일	자 격 · 면 허 증		시 행 처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좌우명,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응시분야에 대한 경력과 실적, 보육철학, 향후 어린이집 운영 방향(원아모집, 신생 어린이집 운영 계획)이 잘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1~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